

[#붙임 1]

#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53-19번지 일원
- 공 급 규 모 : 지하 4층 ~ 지상 최고 49층, 3개동, 총 413세대
- 입주예정시기: 2028년 7월경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 급 대 상 (단위 : m<sup>2</sup>, 세대)

주택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m <sup>2</sup> )				공급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민영 주택	075.6290	75	75.6290	32.5577	108.1867	56.2329	164.4196	82
	084.3643	84	84.3643	35.6913	120.0556	62.7278	182.7834	247
	101.9417	101	101.9417	42.1666	144.1083	75.7973	219.9056	84
	공급세대합계							413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sup>2</sup>)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m<sup>2</sup>) x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예정임.

- 기관별 배정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 민영주택 10%범위 (단위 : 세대)

구분	75		84		소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국가유공자	2	10	5	25	7	35
장기복무 제대군인	1	5	2	10	3	15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1	5	5	25	6	30
중소기업 근로자	2	10	5	25	7	35
장애인   경기도	2	10	7	35	9	45
합계	8	40	24	120	32	160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에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①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 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일정계획(예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모집공고일	2023. 10.27(금) (예정)	일간신문 및 의정부역 센트럴시티 아이파크 홈페이지
견본주택 개관일	2023. 10.27(금) (예정)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56-8번지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3. 11.06(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청약 (https://www.applyhome.co.kr)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3. 11.14(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

- 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인터넷 신청(서류제출 없음)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 (10:00~14:00) 가능합니다. 단, 견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필요서류 견본주택 별도 문의)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1회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li> </ul> </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여 청약신청하시기 바람.</li> </ul>
청약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 청약 가능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의정부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추천기관

신청  
자격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 대부팀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여 청약신청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유의사항

구분	내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관련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공급 접수일에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하여야 함.(서류제출 없음)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 (10:00~14:00)에서 신청 가능(자격검명 및 구비서류 제출)</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됨.</li> </ul>

☐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 ① :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 ② :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③ :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④ :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특별공급 당첨자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발표일에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발표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
- 기관추천 대상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대는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기관추천 예비입주자 포함)에게 우선 공급
-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특별공급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배정 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는 무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포기하고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택 불가
  - 다만, 특별공급 예비입주자가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 기회가 상실된 경우 일반 예비순번 지위 인정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3.10.27.(금)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견본주택 인쇄제작용, '의정부역 센트럴시티 아이파크'홈페이지(예정)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관에서는 **해당 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 명단을 2021.11.01.(수) 14시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Ⅲ

## 건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건본주택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53-19번지
- 분양문의 : 1551-1220
- 건본주택 및 현장 위치도

- 홍보용 인쇄물(리플렛) - 앞면

#붙임 2]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명단 양식 예시

■ 대상자 : 총 _____ 명 (확정 : 00명, 예비 : 00명)							
기관추천특별공급(유형)	추천기관명	주택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추천구분(당첨/예비)
장애인특별공급		75A	○○○	123456-1234567			당첨자
장애인특별공급		75A	○○○	123456-1234567			예비자
장애인특별공급		84A	○○○	123456-1234567			당첨자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유형 및 확정대상자(당첨자)와 예비대상자를 필히 구분하여 표시 부탁드립니다.  
 - 각 주택형별 배정 세대수에 맞게 추천인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예비추천인 명단도 동시에 추천 바랍니다. (예비추천인 명단 배정시)  
 - 예비추천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음.  
 - 예비대상자는 타입별 공급대상의 500%를 선정합니다.  
 - **2023.11.01(수) 14:00** 까지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회신을 요청드리며, 기간 내 미 통보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오니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